

case
10

자동차 에어백 시스템

요약

사례명	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
사례번호	NY N352543 (2025.09.09.)
사실관계	미국산 인플레이터, 태국산 에어백 쿠션, 중국산 하드웨어 등을 한국으로 수입한 뒤, 이를 최종 조립하여 생산한 자동차용 에어백을 미국으로 수출
쟁점 및 판정	<p>①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,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 하지만,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,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,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(character)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 이에 따라, 무역 구제 조치,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
근거법령	-

I 판정사례

사례명 [자동차 에어백 시스템]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

사례번호 NY N352543 (2025.09.09.)

사실관계

요청자 ZF Passive Safety Korea Co., Ltd (대리인: Daeyu Customs Brokerage Corp)

제품명

- 자동차 에어백 시스템 (부품 번호: A0055U2616J A)

제품 구성

- 인플레이터 (미국산)
- 에어백 쿠션 및 플레이트 (태국산)
- 하드웨어 (중국산)
- 커버 (한국산)
- 기타 부품

용도

- 충돌 감지 시 승객을 충격으로부터 보호하는 용도

제조공정



01

외국산 부품
한국 수입



02

최종 조립



03

미국 수출

상세공정 1. 외국산 부품 한국으로 수입

2. 한국에서 최종 조립 수행
 - 부품 삽입, 나사 체결, 기능 테스트 등 수행
3. 미국 수출

쟁점사항

- ✓ 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및 분석



무역구제조치 및 추가 관세 조치 목적의 원산지판정

관련 법령 검토

▣ 무역 구제 조치 및 추가 관세 적용을 위한 원산지판정은 실질적 변형(substantial transformation) 발생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됨

- 실질적 변형 판단 기준: 명칭(name), 성질(character), 용도(use)의 변화 여부

❖ 참고 판정: *CBP Ruling HQ H301619 (2018.11.06.)*

❖ 참고 판례: *Texas Instruments v. United States, 681 F.2d 778, 782 (1982)*

❖ 참고 판례: *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, 16 C.I.T. 308 (1992), aff'd, 989 F.2d 1201 (Fed. Cir. 1993)*

판정 결과

▣ 신청인은 인플레이터가 최종 제품의 주요 구성품이라고 주장하며, 한국에서의 최종 조립 공정은 단순한 부품 결합에 불과하므로,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인플레이터의 원산지인 미국이라고 주장함

- 인플레이터는 화학 추진제를 포함하고 있어 에어백 제어 장치의 명령에 따라 급격한 화학 반응을 통해 가스를 발생시켜 에어백을 팽창시키는 동력원 역할을 담당한다고 설명

▣ 하지만, CBP는 인플레이터가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지 않으며, 충돌 시 운전자를 잠재적 부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쿠션을 제공하는 것은 팽창된 에어백이므로, 에어백이 전체 모듈의 성격 (character)을 결정하는 주요 부품이라고 판단

▣ 이에 따라, 무역 구제 조치,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

결론

- ✓ 무역 구제 조치, 추가 관세 적용 및 원산지표시 목적상 최종 제품의 원산지는 에어백의 원산지인 태국임



II 시사점

- 자동차용 에어백의 경우, 운전자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에어백이 전체 모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판단되며, 본 사례의 경우 에어백이 생산된 국가가 실질적 변형 기준에 따른 원산지로 판정됨



참고자료

- CBP Ruling NY N352543 (2025.09.09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N352543>
- CBP Ruling HQ H301619 (2018.11.06.), <https://rulings.cbp.gov/ruling/H301619>
- Texas Instruments, Inc. v. United States (1982), <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928163/texas-instruments-inc-v-united-states/?q=Texas+Instruments%2C+Inc.+v.+United+States>
- National Hand Tool Corp. v. United States (1993), https://www.courtlistener.com/opinion/6737087/national-hand-tool-corp-v-united-states/?q=National+Hand+Tool+Corp.+v.+United+States&type=o&order_by=score+desc&stat_Published=on